

5.1.5 방송국규정

제정 1997. 08. 30.

제1조(명칭) 본 방송국은 초당대학교 방송국(이하 “본국”이라 한다)이라 하며, 호출부호는 C.U.B.S(ChodangUniversity Broadcasting System)라 한다.

제2조(목적) 본국은 방송을 통하여 본 대학교의 교육이념을 구현하고 학풍을 진작하며 교내외의 공지사항을 신속 보도하여 정서적 교육효과 제고에 기여하고 방송기술의 연구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치) 본국은 초당대학교 안에 둔다.

제4조(사업) 본국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정규 방송
2. 임시·특별 방송
3. 방송 문화 행사
4. 기타 관련 사업

제5조(방송국장) 방송국장은 총장이 되며, 운영전반을 통할하고 본국을 대표한다.

제6조(방송주간) 방송주간은 전임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방송국장의 명을 받아 운영전반을 총괄하는 임무를 맡는다.

1. 방송국원의 부서별 임무 부여
2. 방송기자재 관리와 보수 정비
3. 방송내용 및 프로그램의 제작 지도
4. 기타 방송 업무에 관한 사항

제8조(운영위원회) 본국의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자격 및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운영위원회는 당연직인 방송국장과 방송주간을 포함하여, 총장이 임명하는 10인 이내로 한다.
2. 운영위원장은 방송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방송주간이 된다.
3. 운영위원회는 본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을 심의한다.

제9조(방송국원) 실무국장은 전 방송국원을 대표하며, 본국의 실무를 관장하고 방송업무에 관하여 국원을 지휘 통솔한다. 그 밖의 각 부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제작부장은 프로그램 제작
2. 보도부장은 방송기사 취재 및 기사 작성
3. 아나운서부장은 방송
4. 기술부장은 방송기자재의 보수조정

제10조(방송 프로) 본 대학교의 학칙을 준수하며, 실무국장은 매학기의 방송시간 및 프로그램을 직전 학기말에 편성하여 방송주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국원) 본국은 학생으로 구성된 수습국원, 정국원으로 구별하여 국원을 구성하며, 정국원은 본 대학교의 규정에 따른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자격 요건) ① 실무국장은 정국원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성적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자

② 각 부장은 정국원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성적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자

③ 정국원은 수습기간 6개월 이상 전과정을 마친 자

제13조(자격 제한) 수습국원 및 정국원은 어떠한 단체에도 가입할 수 없다.

제14조(국원 선발) 정국원과 수습국원의 선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 국 원 : 6개월 이상 수습기간을 마친 자 중 실무국장이 추천하여 방송주간의 승인을 얻은 자

2. 수습국원 : 본 대학교 재학생 중(1, 2학년) 소정의 전형을 거쳐 선발된 자

3. 유 시 험 :

가) 응시자격 : 본교 1, 2학년 남·여 학생

나) 응시과목 : 음성테스트, 논문, 영어, 상식, 음악, 면접

4. 특 채 : 방송 관련 분야에 탁월한 기술을 가진 본 대학교 재학생

제15조(임원 선발) ① 실무국장은 정국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선출된 실무국장은 방송주간 제청으로 방송국장의 임명을 받아야 한다.

② 부장은 실무국장의 제청으로 방송주간의 임명을 받아야 한다.

제16조(학생임원 임기) ① 실무국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유고시에는 10일 안에 후임자를 선출하여 잔여 임기를 마치도록 한다.

② 각 부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7조(국원회의) 국원회의는 정국원으로 구성하되 실무국장이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되며, 재적인원 2/3 이상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징계 및 자격상실) ① 본 규정을 위반하거나 무단히 임무를 포기한 국원(수습국원을 포함)에 대해서는 본국의 규정에 의거하여 징계할 수 있다.

② 국원의 자격상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휴학자 및 정학처분을 받은 자

2. 전학년 성적의 평점평균이 2.5 미만인 자

3. 방송국원으로서 품위를 상실했다고 운영위원회의 판정을 받은 자

4. 본국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제19조(대출 승인) 본국의 기자재를 반출할 때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방송주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재정) ① 본국의 재정은 기성회비 및 총학생회 보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② 본국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교 회계연도에 준한다.

제21조(시행 세칙)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습 및 별도의 방송운영규정에 따른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